



의료분쟁상담 의료분쟁 조정/중재 수탁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사고예방 알림마당 의료중재원 소개

# 알림마당

알림마당 자료실 의료분쟁 사례

# 조정중재사례

**◇ 조정중재사례** 감정사례와 예방 TIP
 상담사례

## 난소암 종양감축술 및 항암치료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

 진료과목
 산부인과
 조회수
 1955

**처리결과** 조정불성립

키워드 #난소암 #종양감축술 #향암치료 #사망

○ 단건보기 ○ 복수건보기

사건개요

사안의 쟁점

분쟁해결 방안

처리결과

## 사건개요

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

망인(여/60대)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소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2019년 3월 종양감축수술(1차 수술)을 받던 중 대규모의 장 절제술이 예측되어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종양감축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4월까지 3주 간격으로 3차까지 선행 항암치료를 받았다.

망인은 같은 해 5월 종양감축술(2차 수술, 전자궁절제술, 양측 난관난소절제술,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,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, 충수돌기절제술, 담낭절제술, 대망절제술, 복막절제술, 횡격 막 절제술)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임상시험약을 포함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고 퇴원하였다.

퇴원 다음날 호중구감소성 발열, 흉수, 장폐색 상태로 재입원하여 치료 중 5일 뒤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, 사망진단서상에는 '(가) 직접 사인-다발성 장기부전, (나) (가)의 원인-난소 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.

분쟁의 요지

신청인: 난소암 3기말~4기로 진단받고 개복하여 전이 상태 확인 후 3주 간격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3주 후에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며, 수술 후 회복이 거의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4차 항암 투약에 따른 면역력결핍(패혈증)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고이다.

피신청인: 환자의 병기 및 환자의 회복상태를 고려하였을때 수술 후 항암치료는 무리한 치료라고 볼 수 없으며, 적극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된 호중구감소, 패혈 증 쇽 그로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다.

## 사안의 쟁점

사안의 쟁점

### 분쟁해결방안

감정결과의 요지

단소암 진단부터 선행항암화학요법/종양감축술/보조항암화학요법 등의 흐름은 일반적인 진료과정에 합당해 보이고, 2019년 5월 종양감축술 당시에 혈액 검사 등에서 정상적인 소견을 보여 수술의 결정과 시행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. 이 건의 경우 의무기록에 의하면 2차 수술 시행 3주 경과 후 1차 보조항암화학요법(Taxol + Carboplatin + Durvalumab)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다. 수술후 3주에 시행함에 있어 혈액학적 검사와 이학적 소견을 고려해 보았을 때 투약 시점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. Durvalumab은 새로운 면역치료제이고, 본 임상시험은 난소암에서 Durvalumab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 이 건에서는 1차 보조항암화학요법 후 응급실 내원까지 3일 밖에 걸리지 않아,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이상반응이 빨리 발생하였으나, 혈액 검사와 CT의 소견을 고려해 볼 때,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 이상반응(serious adverse event, SAE)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

#### 손해배상책임의 유무

#### ■ 의료상의 과실 유무

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, 우리 원 감정서 및 진료기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, 자신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암화학요법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이는 의사의 재량의 범위내로 부적절하다 할 수 없다.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달리 없는 이 사건에서 항암화학요법, 특히 임상시험약으로 인한 중대 이상반응(serious adverse event, SAE)인 패혈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.

#### ■ 설명의무 위반 여부

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,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질환 의 증상, 치료방법 및 내용, 그 필요성,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,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,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 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

(대법원 1994. 4. 15. 선고 92다25885 판결),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(치료효과)에 관하여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·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(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7다3162 판결).

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,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임상시험약에 관한 성인 시험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동문자로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의 흔적이 없는 점, 위 문서는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는 28페이지의 출력물로 항암화학요법, 특히 표준치료약제에 첨가되는 임상시험약제 자체의 안전성, 유효성 및 부작용, 그리고 표준치료약제와 비교하

여 신약이 첨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항암화학요법 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 고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다.

###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피신청인이 부담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에 한정하며 그 위자료의 액수는, 이 사건의 내용, 설명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, 망인의 나이 및 기왕 질환 등이 사건 조정 절차 중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금 10,000,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.

## 처리결과

처리결과

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

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,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,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.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,000,000원을 지급하고,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.

● 매우만족 ○ 만족 ○ 보통 ○ 불만족 ○ 매우불만족

**개인정보처리방침** 저작권 안내 오시는 길 사이트맵

관련 사이트 링크

정부부처 관련기관

(04637)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(남대문로5가) T타워(8층)

의료분쟁 상담센터 : 1670-2545 관리자 E-mail : kmedi@k-medi.or.kr

Copyright © 202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. All Rights Reserved.



